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 유로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 유로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맥쿼리 유로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5년 6월 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6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5
3. 모집(판매)예정금액.....	5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5
5. 인수에 관한 사항.....	5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5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6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7
4. 집합투자업자.....	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7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1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2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8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0
1. 재무정보.....	3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34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8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40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0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1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1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1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3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3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5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6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8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9

제 1 부 . 모 집 또는 매 출 에 관 한 사 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맥쿼리 유로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협회코드 68247)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8248	68249	96141	96142	96143	96144	9384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macquarie.co.kr/mi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맥쿼리 유로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협회코드 68247)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8248	68249	96141	96142	96143	96144	9384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5.02	최초 설정
2009.05.02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 ING 유로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명칭 변경
2010.03.16	수익증권판매가격을 2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2010년 세제변경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분배금 유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우편발송 대신 공시로 갈음 가능한 경우 반영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2011.01.10	-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 신설 - 기존 종류별 수익증권 명칭 변경: 종류C->종류C1 - 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관련 문구 수정
2011.07.06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의 건
2012.07.06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법 개정 (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관련) 등
2013.04.03	- 모투자신탁의 해외 자문 조항 삭제 및 유형 변경(기존과 동일한 전략의 역외 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형태로 변경)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및 유형 변경 - 선취수수료 차등화 및 운용보수 변경 -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15시->17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2012.6.29)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서식개정 등
2013.07.26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등
2013.10.23	피투자펀드 운용회사 및 운용인력 변경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4.01.07	자산운용회사 명칭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변경 등 -“ING자산운용”에서“맥쿼리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 -“ING 유로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서 “맥쿼리 유로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2014.05.29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피투자펀드 운용인력 변경
2014.12.30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빌딩 20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장현준	1981	과장	10	496	- 現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멀티에셋운용팀 - 연세대 경영 / 컴퓨터과학 학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박영열	2009.04.24~2014.12.29
장현준	2014.12.30~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매니저 현황

성명	직위	경력연수	총 운용자산	주요경력
Nicolas Simar	Senior Portfolio Manager	18년	757,000,000 유로	* 1994년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에서 Civil Engineering 학위 전공 * 1995년 Institut Français du Pétrole, Paris에서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 전공 * 1996~1999년 Banque Bruxelles Lambert(ING 인수)에서 채권운용 매니저

* 1999년 Equity Value 주식 팀장 및 유로 고배당 펀드 책임운용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2007-05-02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 C1	2007-05-02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종류 C2	2011-01-10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2011-01-10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2011-01-10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2011-05-30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i	미설정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고객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i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환매시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이익금의 70%					
집합투자업자보수	0.2000	0.2000	0.2000	0.2000	0.2000	0.2000	0.2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0.0500	
신탁업자 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80	0.0280	0.0280	0.0280	0.0280	0.0280	0.0280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맥쿼리 유로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맥쿼리 유로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0%이하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맥쿼리 유로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50% 이상(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역외펀드인 NN (L) Invest Euro High Dividend 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0% 이상)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의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NN (L) Invest Euro High Dividend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 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 주요통화(유로화 등)와 한국원화간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선물거래 등 파생상품을 이용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유로 지역의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이하	해외 집합투자증권(유로지역의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③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의 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 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 맥쿼리 유로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단, 유로 지역의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u>엔엔 유로 고배당 펀드(NN (L) Invest Euro High Dividend)</u> 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②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으로서 유로 지역 국가의 기업의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또는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⑥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⑦	장내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⑧	장외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50% 이하
⑩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써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⑪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⑫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운용도 포함
⑬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⑤의 **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⑥~⑪, 아래 “나. 투자제한” 사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단기대출, 계열사 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 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 외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p>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 	최초설정 정부터 1개월 간 (1~2)

	<p>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p> <p>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p> <p>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p>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법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 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1.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p> <p>2.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에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및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p> <p>3. 시가총액비중까지: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p>	
계열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 기타 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1. 소각
 -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유로 지역의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기본운용 전략

- ① 국내자산에 대한 운용전략
 집합투자업자는 단기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② 해외자산의 운용전략

집합투자업자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역외 펀드인 [엔엔 유로 고배당 펀드\(NN \(L\) Invest Euro High Dividend\)](#)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 유로-유로존(Euro Zone) 또는 유로랜드(Euro Land) 라고도 하며, EMU(European Monetary Union) 라고도 하며, 유럽경제통화연맹으로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경제를 대표하는 주요선진국으로 EU가입국가중 재정적자, 정부부채, 인플레이션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국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펀드 구조 및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내용



- 환헤지 관련사항

① 환헤지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② 환헤지방법

유로지역 주요 통화(유로화 등)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필요시 투자국가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환헤지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통화선물, 통화선도 및 FX스왑을 활용할 예정이며, 환헤지 방법은 거래비용 및 환 프리미엄 및 디스카운트를 고려하여 선택할 계획입니다.

③ 목표헤지비율 및 환헤지의 장단점

주요 통화(유로화 등)에 대해 90%이상을 목표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와 개별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해외 자산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동 펀드는 달러 및 외국의 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④ 환헤지 비용 및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

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을 환율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 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금액(원)	비율(%)
환헤지 비용	-	101.459039

환헤지 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환헤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과 헤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05.02 ~ 2015.05.0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유로 지역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MSCI EMU(European Monetary Union) Index] X 95% + [한국은행 목표금리] X 5%

※ MSCI EMU(European Monetary Union) Index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지수입니다.

(2)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조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맥쿼리 유로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맥쿼리 유로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0%이하 투자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유로지역 경제 현황

- 아래 자료는 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국가위주)

(2014년기준)

	GDP	실질경제성장률	1인당 GDP
독일	28,205억 유로(추정치)	1.2%('14년도 3분기)	33,346 유로('13년)
스페인	10,229억 유로('13년)	0.5%('14년도 3분기)	29,150 달러('13년)

프랑스	20,800억 달러('14년도 3분기)	0.3%('14년도 3분기)	41,500 달러(추정치)
이탈리아	20,639억 달러(추정치)	-0.4%(추정치)	32,839 달러(추정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모투자신탁에 투자되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해외자산의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결과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후 원화의 가치가 해외 투자 대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외화자산의 가치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져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요통화(유로화 등)와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

	<p>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부도 등의 위험	<p>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유로지역 시장)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p>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자금송환 위험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p>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p>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p>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p> <p>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p>

	<p>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p> <p>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p> <p>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p> <p>"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유동성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그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수수료부과 위험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공제하게 되며, 이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 듭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유로 지역)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주식-재간접형 자투자신탁으로서 위험등급이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 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다만,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해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각 위험자산에 대한 상세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BB+이하), 기업어음(CP)(A3미만), 상품(Commodity), 리츠(REIT's), 출자지분(유한, 합자회사, 조합 등),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② 중위험자산이란 회사채(BBB-이상), 기업어음(CP)(A3이상),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③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특수채, 정기에금, 양도성예금증서(CD), 콜론,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주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혜지를 실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5)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 주6)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7)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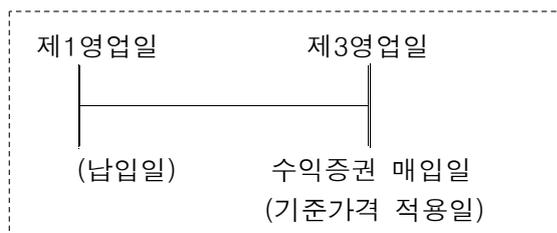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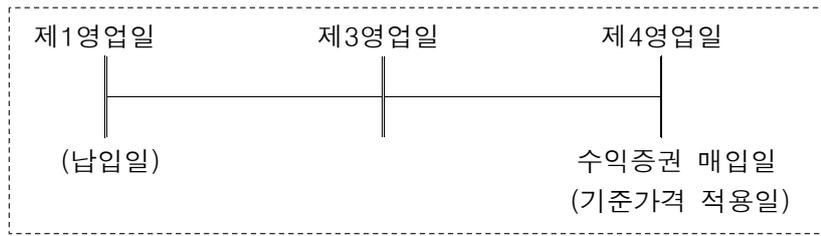
구 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 이내
종류 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i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고객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0일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일괄 전환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익영업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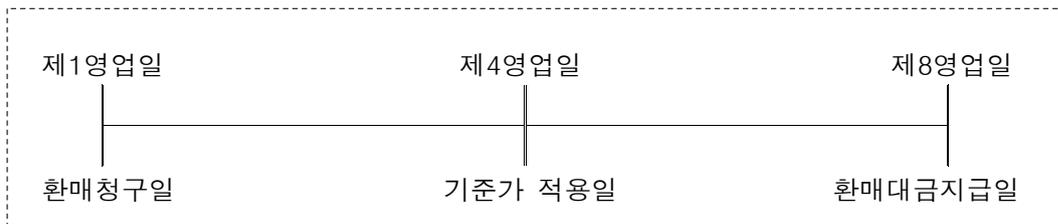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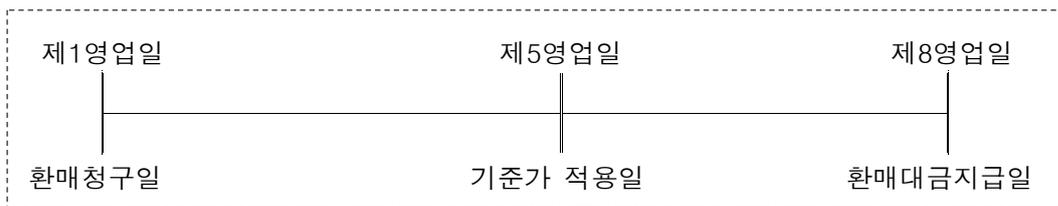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상기일정에도 불구하고, 모펀드 투자대상국의 장기 연휴 등으로 환매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

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빈번한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 포트폴리오 재조정, 거래비용 및 각종기회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환매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종류		지급비율(연간,%)		비고 (지급시기)
		종류A	종류 A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환매시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 전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④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자동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전환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 ③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추가 납입이 발생하였고, 이 추가납입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경

우 : 환매수수료 부과

(6)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위 전환방법의 (가)에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본 신탁계약 시행일 이전 종류C 수익증권을 매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부터 종류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체계가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은 불가 합니다.

※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후 전환하는 경우 판매사간 전산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판매사별로 매영업일 혹은 월별 특정일 또는 주별 특정일 등 전환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법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평가할 때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유가증권으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종류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환매시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이익금의 70%					

나. 집합투자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집합투자업자보수	0.2000	0.2000	0.2000	0.2000	0.2000	0.2000	0.20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0.0500	
신탁업자 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280	0.0280	0.0280	0.0280	0.0280	0.0280	0.0280	
기타 비용	0.0000	0.0033	0.0033	0.0033	0.0000	0.0000	0.0033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2880	1.7913	1.6913	1.5913	1.4880	1.3880	0.3413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1.8926	2.3913	2.2913	2.1913	2.0880	1.9921	0.9413	-
증권 거래비용	0.0008	0.3512	0.3512	0.3512	0.4387	0.0005	0.3512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종류A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5.02~2015.05.01)
- 2)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상기 도표는 모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자기구인 [NN \(L\) Invest Euro High Dividend](#)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60%(운용보수 포함, 기타 비용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종류A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05.02~2015.05.01)
-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수익증권	298	714	1,155	2,379
종류 C1 수익증권	251	739	1,208	2,474
종류 C-i 수익증권	98	308	535	1,187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 C1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자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기(2014.05.02 - 2015.05.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7기(2013.05.02 - 2014.05.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6기(2012.05.02 - 2013.05.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소규모펀드로 회계감사 면제

*재무정보는 운용펀드 기준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8기	제 7기	제 6기
	(2015.05.01)	(2014.05.01)	(2013.05.01)
운용자산	389,770,407	393,834,727	318,052,286
증권	384,581,813	393,614,324	317,992,99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188,594	220,403	59,29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081	996	874
자산총계	389,776,488	393,835,723	318,053,16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0	105	103
부채총계	0	105	103
원본	462,675,681	533,249,938	554,758,499
수익조정금	-979,641	-1,429,904	-229,840
이익잉여금	-71,919,552	-137,984,416	-236,475,602
자본총계	389,776,488	393,835,618	318,053,057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 기	제 7기	제 6기
	(2014.05.02 - 2015.05.01)	(2013.05.02 - 2014.05.01)	(2012.05.02 - 2013.05.01)
운용수익	49,043,646	89,543,719	43,436,429
이자수익	93,454	108,254	121,032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8,950,192	89,435,465	43,315,39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20,963,198	227,528,135	279,912,031
당기순이익	-71,919,552	-137,984,416	-236,475,602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8기(2015.05.01)		제7기(2014.05.01)		제6기(2013.05.0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5,188,594		220,403		59,29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188,594		220,403		59,291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4,330,000		4,260,000	
1. 콜론			4,330,000		4,26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384,581,813		389,284,324		313,732,995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84,581,813		389,284,324		313,732,99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6,081		996		87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6,081		996		874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89,776,488		393,835,723		318,053,16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0		105		10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105		103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0		105		103	
자 본							
1. 원 본		462,675,681		533,249,938		554,758,49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익잉여금		-72,899,193		-139,414,320		-236,705,442	
(발행좌수 당기: 462,675,681 좌			이익잉여금		-137,984,416		-236,475,602
전기: 533,249,938 좌			수익조정금		-1,429,904		-229,840
(발행좌수 당기: 554,758,499 좌)							
전기: 738.56 원							
(기준가격 당기: 842.44 원							
전기: 573.32 원)							
자 본 총 계		389,776,488		393,835,618		318,053,05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89,776,488		393,835,723		318,053,160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8기(2014.05.02-2015.05.01)		제7기(2013.05.02-2014.05.01)		제6기(2012.05.02-2013.05.0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93,454		108,254		121,032
1. 이 자 수 익	93,454		108,254		121,032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9,068,370		89,436,602		43,323,136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5			
7. 기타거래차익	49,068,370		89,436,597		43,323,13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18,178		1,137		7,739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743		1,105		1,085	
8. 기타거래손실	117,435		32		6,654	
운 용 비 용		120,963,198		227,528,135		279,912,031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20,963,198		227,528,135		279,912,03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1,919,552		-137,984,416		-236,475,602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55442689		-0.258761242		-0.42626765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종류 A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5.02 - 2015.05.01	6	4	0	0	1	0	5	4
2013.05.02 - 2014.05.01	6	3	0	0	0	0	6	4
2012.05.02 - 2013.05.01	6	3	0	0	0	0	6	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종류 C5 수익증권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	--------	--------	--------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5.02 - 2015.05.01	0.07	0.07	0.01	0.01	0.07	0.07	0.01	0.01
2013.05.02 - 2014.05.01	0.07	0.07	0.00	0.00	0.00	0.00	0.07	0.08
2012.05.02 - 2013.05.01	0.07	0.06	0.00	0.00	0.00	0.00	0.07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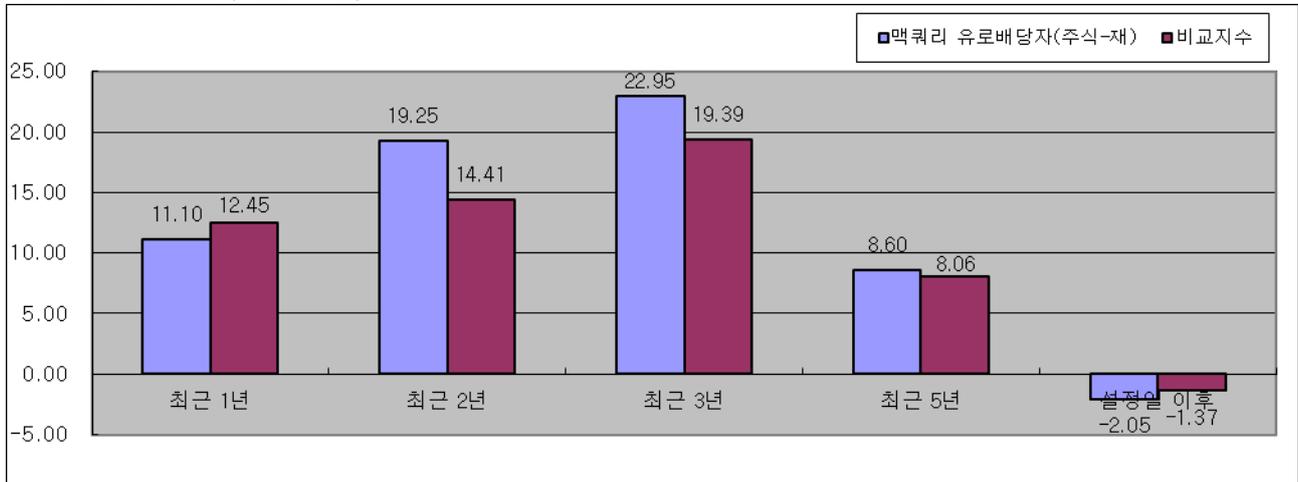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 기준)



*운용 펀드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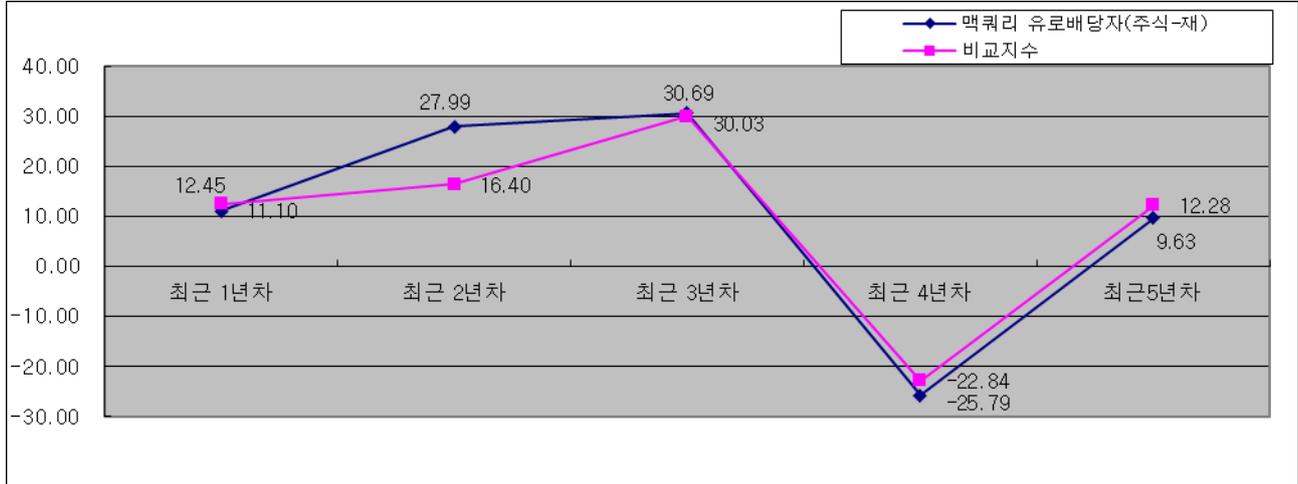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06.02 ~15.06.01	13.06.02 ~15.06.01	12.06.02 ~15.06.01	10.06.02 ~15.06.01
맥쿼리 유로배당자신탁(주식-재)	11.10	19.25	22.95	8.60	-2.05
비교지수	12.45	14.41	19.39	8.06	-1.37
맥쿼리 유로배당자신탁(주식-재)A	9.68	17.75	21.18	6.83	-3.79

비교지수	12.45	14.41	19.39	8.06	-1.37
맥쿼리 유로배당자신탁(주식-재)C5	9.62	17.67	21.09	-	0.00
비교지수	12.45	14.41	19.39	-	0.00

주 1) 비교지수 : (0.95 * [MSCI_EMU]) + (0.05 * [한은목표금리])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운용 펀드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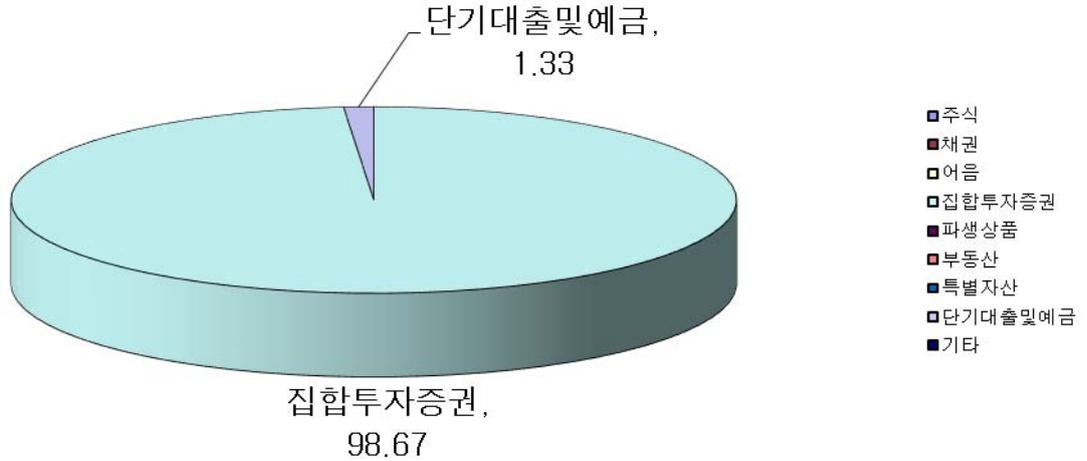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4.06.02 ~15.06.01	13.06.02 ~14.06.01	12.06.02 ~13.06.01	11.06.02 ~12.06.01	10.06.02 ~11.06.01
맥쿼리 유로배당자신탁(주식-재)	11.10	27.99	30.69	-25.79	9.63
비교지수	12.45	16.40	30.03	-22.84	12.28
맥쿼리 유로배당자신탁(주식-재)A	9.68	26.41	28.36	-27.25	7.55
비교지수	12.45	16.40	30.03	-22.84	12.28
맥쿼리 유로배당자신탁(주식-재)C5	9.62	26.30	28.26	-27.30	-
비교지수	12.45	16.40	30.03	-22.84	-

주 1) 비교지수 : (0.95 * [MSCI_EMU]) + (0.05 * [한은목표금리])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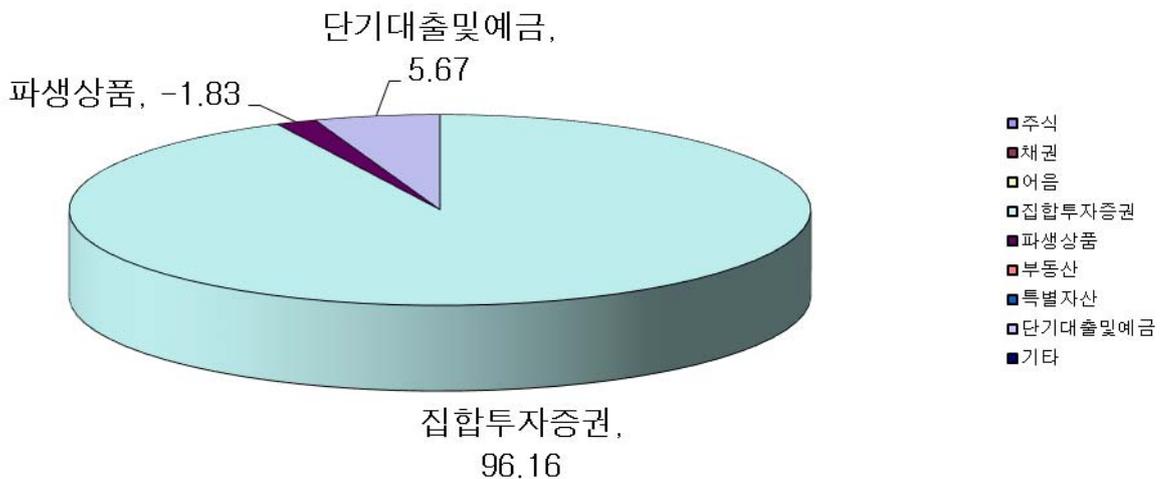
(2015.05.01 기준/ 단위: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4	0	0	0	0	0	0	0	4
	(0.00)	(0.00)	(0.00)	(98.67)	(0.00)	(0.00)	(0.00)	(0.00)	(0.00)	(1.33)	(0.00)	(100.00)
합계	0	0	0	4	0	0	0	0	0	0	0	4
	(0.00)	(0.00)	(0.00)	(98.67)	(0.00)	(0.00)	(0.00)	(0.00)	(0.00)	(1.33)	(0.00)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 현황]

- 맥쿼리 유로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5.05.01. 기준/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6.00)
USD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EUR	0	0		4	0	0		0		0	0	4
	(0.00)	(0.00)	(0.00)	(101.94)	(0.00)	(-1.94)	(0.00)	(0.00)	(0.00)	(0.00)	(0.00)	(94.00)
합계	0	0	0	4	0	0	0	0	0	0	0	4
	(0.00)	(0.00)	(0.00)	(96.16)	(0.00)	(-1.83)	(0.00)	(0.00)	(0.00)	(5.67)	(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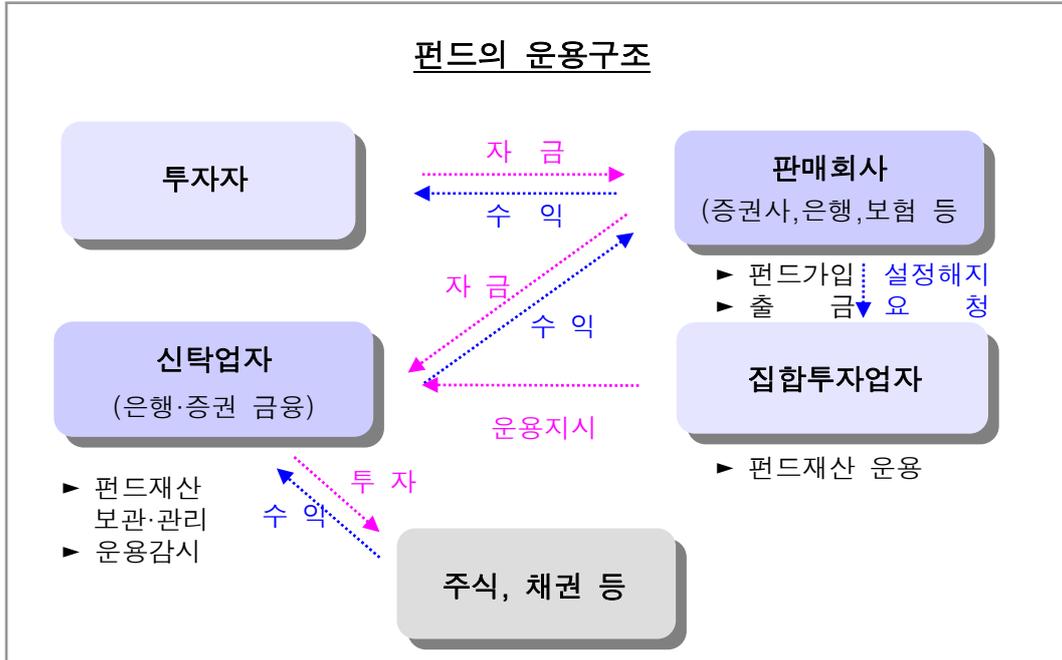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20층) 연락처 : 02-3703-9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macquarie.co.kr/mim
회사 연혁	<p><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p> <p>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주) 설립 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1999.05.28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p> <p><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p> <p>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 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 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5.04.26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p> <p><ING 자산운용 주식회사></p> <p>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 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 2013.11.27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의 인수</p> <p><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p> <p>2013.12.27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p>
자본금	273억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4.03.31	'13.03.31	계정과목	'14.03.31	'13.03.31
현금및예치금	340.7	355.7	영업수익	228.0	240.3
유가증권	6.4	3.4	영업비용	143.6	162.9
대출채권		0	-	-	-
유형자산	7.6	7.3	-	-	-
무형자산	87.2	87.8	-	-	-
기타자산	42.8	45.0	-	-	-
자산총계	484.8	499.2	영업이익	84.4	77.4
예수부채	1.7	10.5	영업외수익	0.2	43.2
차입부채	-	0	영업외비용	1.9	3.0
기타부채	56.5	44.8		-	-
부채총계	58.1	55.3	경상이익	82.6	117.6
자본금	273.3	273.3	특별손익	-	-
자본잉여금	55.6	54.9	법인세	18.2	26.9
이익잉여금	97.9	115.7		-	-
자본총계	426.8	443.9	당기순이익	64.5	90.7

라. 운용자산 규모(2015.06.01 현재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단기금융	투자일임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27	65	2,170	50	611	27	5,106	132,926	141,78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모투자신탁의 해외 투자자문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연락처 : 1588-9999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연락처 : 02-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 P&I(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4층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	--	--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중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 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 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 되어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당사 홈페이지 공시 등)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 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macquarie.co.kr/mi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1)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p>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선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p>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증권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립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

	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계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